

#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현찬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85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11월 6일  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성백진, 김혜련, 김동윤,  
김진철, 김현기, 김용석(서초),  
김생환, 조규영, 김구현 의원  
(9명)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 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“무주택 세대주”를 “무주택 구성원”으로 함(안 제2조제2항다목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중 “무주택 세대주”를 “무주택 구성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주거약자 등"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,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. 가.~나. (생 략)</p> <p>다. <u>무주택 세대주로서</u>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~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무주택 구성원으로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##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-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이현찬